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김용태 · 이인선
서일준 · 강선영 · 김대식
윤영석 · 임이자 · 신동욱
한지아 · 강명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·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, 화폐제조기반의 개선,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,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

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4조 및 제15조).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이익의 배당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 및 출자)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,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4조(자본금 및 출자)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다.</u>
제15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3. 국고에의 납입</u>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5조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이익의 배당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